

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자가점검표<가정방문형>

○ 장기요양기관명(기관기호):

○ 기관 확인자 성명(직종):

2025년 월 일

연번	업무구분	점검내용	예	아니요	비고
1	시설 기준	1 각 실의 용도에 맞는 운영하는가? 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방문간호 시설기준 준수)			
2	인력 배치 기준	2-1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방문간호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?			
		2-2 방문간호에 시설장을 제외한 간호사 1명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?			
		2-3 방문요양에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1명 배치기준 준수하는가?			
		2-4 사회복지사는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는가?			
3	개인정보 동의서	3-1 서비스 개시 전 통합재가서비스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수급자용)를 징구·보관하는가?			
		3-2 동의서에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가?			
4	급여 계약	4-1 급여개시 전 안내 필수사항(매뉴얼 23P)은 안내하고 있는가? *(안내사항) ① 하나의 기관에서 월정액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급여제공 ② 등급별 월정액 및 필수서비스 제공 기준 ③ 월정액 산정자의 본인부담금 ④ 월정액 산정자의 월 중 급여계약 종료 시 타 급여 이용 불가			
		4-2 계약서의 급여범위 및 제공내용에 통합재가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는가?			
		4-3 계약서에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종류, 횟수, 본인부담금 명시 되어 있는가?			
5	욕구조사 및 급여제공 계획수립	5-1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가?			
		5-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조사를 기초하여 필수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는가?			
		5-3 수급자의 욕구 및 기능상태 변화, 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 후 통보하는가?			
6	급여제공 기록지	6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,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급여제공기록지(통합재가)를 작성하는가? * (안내사항) 각 급여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(시행규칙 별지 제12호~15호) 작성 가능			

연번	업무구분	점검내용	예	아니요	비고
7	급여관리업무	7-1 통합재가 수급자 <u>전원에게 월 1회 이상 급여관리업무</u> 를 수행하고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관리 등록에 입력하는가?			
		7-2 사례관리자 직종을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로 선정하는가?			
		7-3 사례관리자가 소속된 급여종류의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 가정 방문에서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일지(세부사항 별지 제24호서식)를 작성·보관하는가?			
		7-4 상담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하는가?			
8	급여제공 결과평가	8-1 통합재가 수급자 <u>전원,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평가</u> 를 작성하는가?			
		8-2 사례관리자(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)가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수행하는가?			
		8-3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·통보 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는가? (전산경로) 급여계약통보서 > 급여제공계획서 > 급여제공모니터링			
9	사례회의	9-1 통합재가 수급자 전원에게 대하여 <u>월 1회 이상 사례회의</u> 의 후 <u>상세회의 1명 이상 실시</u> 하고,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(사례회의)에 작성하는가?			
		9-2 사례회의에는 사례관리자를 제외하고 다른 직종의 종사자 또는 외부기관 등 참석하는가? * (다른 직종 등) 요양보호사, 물리(작업치료사 등), 수급자(보호사), 외부기관 등			
		9-3 사례회의의 결과를 급여제공계획 또는 내용에 반영하는가?			
10	급여비용 청구	10-1 실제 제공된 서비스대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청구하는가?			
		10-2 청구를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하는가? (①방문3종 청구→②방문3종 가감산→③통합재가 가감산→④통합재가 청구) * <u>월 중 급여 계약 변경자는 무조건 통합재가서비스 청구를 먼저 한 뒤, 일반 급여종류 청구 진행</u>			
		10-3 월정액 산정요건(①필수서비스 충족, ②월한도액 비율(95%이상), ③월정액 인정여부)을 확인하여 청구하는가?			
		10-4 월 중 등급변경, 갱신 등으로 인한 인정 유효기간 변경 계약이 필요한 건의 경우, <u>적용등급을 선택했는가?</u>			
		10-5 통합재가 청구 전 해당 급여종류에서 특정내용등록 필수 입력 값(5등급 일반요양제공 사유 등)을 모두 입력했는가?			
		10-6 통합재가 청구 입력 중 월 중 목록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자에 대해 특정내용을 입력했는가?			
11	급여비용 심사	11 <u>불능·반려된 사유</u> 를 심사지급통보서를 통해 확인하고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가?			
12	급여비용 환수	12 통합재가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 및 가산적용을 착오하거나, 실제와 다르게 청구됨이 확인될 경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가? * 통합재가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으로 월정액이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<u>사업비(정책지원금, 한시적 본인부담금, 이동지원서비스)도 추가적으로 환수</u> 될 수 있음			